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

2025. 10. 23.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10. 13. 최은하 의원 외 11인

나. 회부일자: 2025. 10. 14.

다. 상정일자: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2025. 10. 23.)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차해영 의원

가. 제안경위

1) 제안자 : 최은하 의원 외 6인

2) 제안일 : 2025. 10. 13.

3) 회부일 : 2025. 10. 14.

나. 제안이유

백일해¹⁾에 대한 면역이 완성되지 않은 영아의 보호를 위해 임산부 및 배우자에게 백일해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마포구 출산가정의 건강증진과 감염병 예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됨.

다.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 (안 제1조)

1) 보르데텔라 백일해균(*Bordetella pertussis*, 그람 음성균)에 의한 감염으로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으로, '흙' 하는 소리, 발작, 구토 등의 증상이 동반된 14일 이상의 특징적인 기침 양상을 보인다. 연령이 어릴수록 사망률이 높아 1세 미만의 사망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http://www.snuh.org/>)

- 2) 백일해 예방접종의 지원대상을 규정함 (안 제2조)
- 3) 예방접종 지원내용과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4)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에 대한 환수 근거를 마련함 (안 제5조)
- 6)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라.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2) 예산조치 : 비용추계 또는 미첨부 사유서 참고
- 3) 기타
 - 가) 입법예고 : 2025. 10. 1. ~ 2025. 10. 10. (의견 없음)

3. 검토의견 [신준호 전문위원]

가. 조례 제정 배경

- 질병관리청은 2024년 방역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고된 법정감염병 현황을 분석해 '2024 감염병 신고 현황 연보'를 발간하였는데, 지난해 법정감염병 신고환자 수가 16만8,586명으로 전년 대비 54.4% 늘었고, 특히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백일해, 성홍열 등 호흡기 전파 감염병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음. 2)

2) 보도자료 : 작년 감염병 발생, 전년비 54.5%↑...소아·청소년 '백일해' 유행(뉴스핌, 2025.6.26.)

- 백일해는 성인에서 경증 기침으로 지나가더라도 신생아·영아에서는 폐렴, 뇌손상, 사망 등 중증 합병증으로 유발 가능성이 높음.
- 이에 영아 보호 목적의 가족·접촉자 기반 차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서울시 자치구 다수³⁾에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마포구만의 정책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나. 주요 조문 검토

- 조례안의 구성으로는 목적을 명시하고(안 제1조), 예방접종의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으며(안 제2조), 예방접종 지원내용과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3조)과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안 제4조), 환수조치(안 제5조), 피해 발생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으로 본칙 7개 조문과 부칙 1개 조문으로 되어 있음.
-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으로 출산가정의 건강증진과 감염병 예방을 담고 있으나, 다소 포괄적으로 임산부 및 가족의 건강보호를 통한 신생아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항으로 구체성이 다소 필요해 보임.
- 안 제2조 지원대상은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산부 및 배우자, 분만 직후 산모 및 배우자를 포함하여 공중보건 효과를 높임. 다만,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은 다소 재량권이 과도한 우려가 있음.
- 안 제3조 지원내용 및 절차는 현실적 측면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 1회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전환시 제외됨을 규정함.

3) 중구, 관악구, 광진구, 금천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영등포구, 용산구

- 안 제4조 예방접종의 위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5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을 경우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 안 제6조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상위 법령을 준용하여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함.

다. 종합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전국적으로 백일해 확진자 및 의사환자⁴⁾가 급증하고, 특히 면역력이 취약한 영아층의 중증 합병증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임신부를 통한 수동면역 형성을 통해 신생아의 초기 감염을 예방하려는 공공 보건적 목적을 지니고 있음. 이는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예방정책으로서 정책적 필요성과 공익성이 인정됨.
- 아울러, 재정적으로 1인당 42,280원을 기준으로 5개년 5억4,689만원의 추계는 타당하나, 출생률 및 접종률의 변동과 백신 단가 인상 등의 변수에 따라 예산이 변할 수 있으므로 향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예산 민감도 분석 등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확보해야 하겠음.

4)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나 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관계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필수예방접종)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이하 "필수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이하 생략)

제25조(임시예방접종)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이하 "임시예방접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2조(건강증진과 의료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연령별 건강상의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을 위한 의료·요양 제도 등을 확립·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 타 : 없 음